

< 특허청 고시 제2019-22호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 : 산업재산활용과]

제정 2019. 12. 16. 고시 제2019-2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기업"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전담토록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대행시키기 위해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6. "금융회사등"이라 함은 전담기관과 제12조의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 은행을 말한다.
7.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으로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특허청 등록원부에 존속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고 금융회사등이 질권을 설정한 권리를 말한다.
8. "채무불이행"이라 함은 채무자인 기업이 최소 3개월 이상 이자 또는 원리

금 납부를 연체하거나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등이 자체 기준을 통해 결정한다.

9. "금융회사등의 손실"이라 함은 전문기관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을 의뢰한 날을 기준으로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잔액(대출원금 대비 미상환액)을 말한다.

10. "금융회사등의 출연금"이라 함은 금융회사등이 사업비,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을 위해 납입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회수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이 법 제28조의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을 평가한 가치평가 금액내에서 기업의 산업재산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실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이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기한보다 1년 이상 상회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제15조의 사업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적용한다.

제2장 출연금 관리

제5조(사업의 재원) ①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은 사업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되, 사업의 재원으로 정부가 매년 출연금을 전담기관 사업계정에 납입하고 금융회사등도 정부 출연금과 동일하게 출연금을 매년 1월말까지 납부한다.

② 정부와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이외에도 사업을 통한 수익금과 이자수익도 사업재원으로 사용한다.

③ 금융회사등이 이 사업에 중도 탈퇴시에는 잔여재산은 반환되지 않는다.

제6조(사업재원 관리기준) ① 전담기관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사업재원을 관리한다.

② 전담기관은 당해연도 사업재원의 이월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당해연도 사업재원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정부 출연금의 배분) ①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 출연금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대출실적 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신용도가 낮은 기업 등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을 고려한다. 다만, 사업의 1차 연도에는 금융회사별 전년도 대출실적 규모와 기본 납부액을 각각 50퍼센트 비율로 하여 금융회사별 사업계정에 정부 출연금을 배분할 수 있다. ② 정부 출연금 배분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8조(사업재원 사용범위) 사업재원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게 된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2. 매입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연차료 등 유지·관리
3. 전담기관 사업운영, 기관간 문서유통·정보교환을 위한 시스템 설계·관리
4. 전문기관 사업운영 및 성과보수
5.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부정사용 출연금 회수) ① 청장은 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 각 호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금액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위한 전담기관의 사업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장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전담기관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청장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전담기관에 위탁하고 전담기관으로는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를 지정한다.

제11조(수행업무)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의 매입

2.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처분 및 실시권 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활용
3.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경영 컨설팅
4.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사업 수익금 등 사업재원의 관리,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에 따른 비용 지급
5. 전문기관의 선정과 평가·관리·감독
6.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7. 사업과 관련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8. 기타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금융회사등과 협약) ① 전담기관은 금융회사등의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기 위해 금융회사등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협약을 통한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가격은 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금융회사등의 손실의 최대 50퍼센트를 한도로 하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수립) 전담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시행을 위해 매사업연도 1월말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조직 및 인력) 전담기관의 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수행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한다.

제15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를 출연한 금융회사등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

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전문기관의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산업재산권 거래 전문인력과 역량을 보유한 민간 기관·단체로서 세부 선정기준은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이상 공고를 거쳐 위원회의 서면·발표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선정 시 사업수행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기간 종료 후에 기 선정된 전문기관을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3년 이내로 재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성과관리) ① 전담기관은 사업재원 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재원 운용의 개선 발전과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전문기관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실적, 활용 실적 및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경영 컨설팅 실적 등을 기준으로 연간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전문기관이 당해연도에 개별 산업재산권을 거래하여 얻은 수익금의 최대 50퍼센트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차년도에 전문기관에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다만, 개별 거래 수익금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④ 전담기관은 거래 수익금을 전문기관 성과보수, 산업재산권에 대한 연차료 및 권리이전 비용 등 실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금융회사별 사업계정에 납입한다.

제18조(선정취소 및 계약해지) 전담기관은 전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전문기관이 사업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 전담기관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회계는 다른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17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정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전담기관 임직원의 의무) ①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전문기관

제21조(수행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예비평가, 평가기관의 가치평가 결과 검토, 손실보전 여부 및 손실보전을 결정
2. 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의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3.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경영 컨설팅
4.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술분야별 분류, 외부 공개, 가치 증대 및 연차료 납부 등 유지·관리
5. 매입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술 마케팅, 매각 및 실시권 허락 등 활용
6.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22조(사업계정 설치 및 운영) 전문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 제17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정을 설정·운영하여

야 한다.

제23조(전문기관 임직원의 의무사항) ①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사업수행 절차

제24조(예비평가) ① 기업의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신청에 대해 금융회사등은 내부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에게 예비평가를 의뢰한다.

② 전문기관은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금융회사에게 제공한다.

③ 전문기관은 예비평가지 산업재산권의 거래 가능성을 심사하고, 기업의 신용등급, 창업연도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예비평가 의견을 작성한다.

④ 예비평가지 기업이 제시한 특허가 사업화 단위로 군집화 여부, 핵심특허 누락 여부, 해외특허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하여 금융회사등에게 해당사항을 고지한다.

⑤ 전문기관은 기업이 해외특허를 대출에 활용하고자 경우, 채무불이행시 해당 권리를 전문기관의 소유로 한다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은 예비평가 결과 해당 산업재산권의 거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매입 거절의사를 금융회사에 고지한다.

제25조(가치평가) 평가기관은 로열티공제법, 현금흐름할인법 등에 기반하여 가치를 평가하되 향후 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담보 산업재산권의 회수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가치평가 검토) 전문기관은 시장거래 관점에서 평가기관의 가치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와 별표 2에 따른 손실보전율을 금융회사와 평가기관에 통보한다.

제27조(산업재산권 매입 의뢰) 금융회사등은 채무불이행 발생시 자체적으로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각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등의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전문기관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담보산업재산권 매입, 가격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을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의뢰한다.

② 전문기관은 당초에 정한 손실보전율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매입한 산업재산권은 전문기관의 소유로 한다.

③ 전문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실과 매입 가격을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전담기관은 금융회사에게 매입 대금을 지급한다.

제29조(산업재산권 관리) ①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로 산업재산권을 분류하고 산업재산권의 거래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한다.

② 전문기관은 산업재산권의 연차료 납부기간이 도래한 경우, 연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거래 가능성이 극히 저조한 산업재산권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연차료 미납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다.

제30조(산업재산권 수익화) ① 전문기관은 산업재산권 수익화를 위해 자체 비용으로 홍보자료 제작 등 마케팅 활동을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은 산업재산권을 매각, 실시권 허락 등 거래 시에는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수익화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전담기관의 사업계정에 납부한다.

제6장 사업결과 보고, 정산, 사후관리

제31조(사업결과 보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당해연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결과를 다음 연도의 1월 말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한다.

1.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실적(대출액, 대출기간, 신용등급, 창업년차, 매출·고용 규모, 우대금리, 자금용도 등)

2. 매입한 산업재산권 현황(권리별 종류, 해외 권리 여부, 연차료 납부 현황 및 향후 납부 예정액, 소멸 예정 권리 등)
3. 산업재산권 활용 실적(매각 및 실시권 계약 현황 및 수익금 등)

제32조(사업비 정산)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에 소요된 경비, 수익금 등을 포함한 당해연도 정산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사후관리) ①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전문기관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매각, 실시권 허락 및 소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문기관 소유의 산업재산권을 전담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2. 기타 전문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이 종료된 경우, 잔여재산은 소진될 때까지 부실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사업 운영비 및 이와 부대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제7장 보 칙

제34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청장은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참여 제한 등을 취할 수 있다.

제35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제2019-22호, 2019. 12. 1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운영 이전의 대출건에 대한 매입) 특허청과 금융회사등이 2019년 4월 17일,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이후 실시한 산업재산권 담보대출에 한해, 금융회사등이 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유한 담보 산업재산권을 전문기관에 매입 의뢰시 전문기관이 매입 여부를 결정하며, 매입가격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금융회사 손실의 30퍼센트로 한다.

【별표 1】

□ 사업 1차년도 정부 출연금 배분

- 개별 금융회사의 전년도 대출실적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50%를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개별 금융회사에 동일한 비율로 배분

□ 사업 2차년도 이후 정부 출연금 배분

- 전년도 대출실적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70%를 배분하고, 나머지 30%는 대출기업의 신용도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

* (예시) A~G은행을 신용도 평가결과 순서대로 1~7위로 구분하여, 정부 출연금 배분율을 1위 25%, 2위 21%, 3위 18%, 4위 14%, 5위 11%, 6위 7%, 7위 4%로 적용

< 대출기업의 신용도별 대출실적 평가 모형 >

A은행, 신용등급별 대출결과 (단위:억원)			
신용등급	대출액 (A)	가중치 (B)	가중치 반영액 (A×B)
B- 이하	500	1.00	500
B0	400	0.90	360
B+	300	0.80	240
BB-	200	0.70	140
BB0	100	0.60	60
BB+	50	0.50	25
계	1,550	-	1,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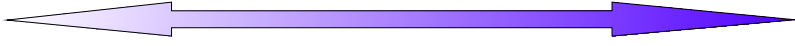
B은행, 신용등급별 대출결과 (단위:억원)			
신용등급	대출액 (A)	가중치 (B)	가중치 반영액 (A×B)
B- 이하	50	1.00	50
B0	100	0.90	90
B+	200	0.80	160
BB-	300	0.70	210
BB0	400	0.60	240
BB+	500	0.50	250
계	1,550	-	1,000

- 다만, 특정은행에 정부 출연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 출연금 배분시 특정은행에 대한 정부 출연금 한도를 전체 은행별 정부 출연금 평균의 3배로 제한

【별표 2】

□ 전문기관은 손실보전율을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해 거래 가능성(핵심 특허 여부)을 기준으로 하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설립한 지 3년 이하의 창업초기 기업과 매출액 3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한 대출 시 손실보전율을 상향

< 손실보전율 결정 기준 >

구분	손실보전율					매입거절
	50%	45%	40%	35%	30%	
(원칙) 핵심특허 여부						비핵심 특허 (거래 가능성이 낮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국내(외) 핵심특허군(群) 으로 거래 가능성이 높음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거래 가능성이 다소 높음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거래 가능성이 보통 </div>			

* 우대사항 등

1. 창업초기 기업(설립한 지 3년 이하), 매출액 3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대출건은 손실보전율 50% 적용(매입거절 특허가 아닌 경우)
2.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건은 손실보전율 상향 적용(매입거절 특허가 아닌 경우)
3.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결과, BBB등급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율 30% 적용

【별표 3】

□ 전문기관 선정기준

- 해외·국내 산업재산권 매입·관리·거래(수익화) 등에 대한 전문인력, 사업실적, 시스템 등을 보유한 민간기관·단체

< 전문기관 선정기준 >

선정기준	주요내용
설립목적	산업재산권을 매개로 또는 기반으로 하는 매입·거래·수익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자본금	자본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회사
전문인력	변리사 2인 이상 보유하고 기술분야별 학사 이상의 학위와 지식재산 거래·수익화 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정식 고용계약 인력을 3명 이상 등 총 5명 이상의 전문인력 보유
국내외 산업재산권 거래실적	국내외 산업재산권 거래를 통해 최근 3년간 로열티, 수수료 등 총 매출액이 20억원 이상
산업재산권 보육 역량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권리화, 활용, 이전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증대하거나 실현에 필요한 역량과 경험 보유
전산 시스템	내부 전산망이 구축되어 산업재산권 관리 시스템, 산업재산권 매입·거래 관련 신속한 의사결정시스템 보유
해외 산업재산권 거래 네트워크 보유	국내외 산업재산권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필요한 해외 거래 네트워크 보유 및 거래 실적 여부

【별표 4】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요청서 >

대 출 기 업	주 소	(우)_____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대 출 부실현황	대출은행		대출일	
	대출액		금융회사 담당자명/직책	
	손실액		담당자 이메일	
	손실보전율 (매입율)		담당자 전화번호	
	매입액			
매입요청 권리(등록)번호	특허 제 10-_____ 호 외 건			
발명(고안)의명칭				
《 첨부서류 》				
1. 채무불이행 확정에 관한 서류일체				
2. 질권실행 및 매입 계약서				
《 주의사항 》				
- 매입요청서는 전담기관으로 제출하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 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				
신청기관 : (직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전문기관 장 귀하				